

(구)대관령(상)휴게소 관리위탁 재협약 동의안

의안 번호	54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2018. 11. .

제 출 자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제1항에 의거 (구)대관령(상)휴게소의 부실 운영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을 하고자 함.
- (구)대관령(상)휴게소 위탁운영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, 대관령 마을 영농조합법인과의 재협약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2. 관련근거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제2항

3. 위탁개요

□ 위탁대상

- (구)대관령(상)휴게소 건물 3동(1,427.827㎡) 및 부지 7필지 (35,422㎡)
※ 【붙임1 참고】

□ 위탁기간 및 비용

- 위탁기간 : 2019. 01. 01 ~ 2019. 12. 31(1년간)
- 위탁운영비 : 28,140,000원 ※ 【붙임2 산출내역 참고】
 - 위탁운영비는 원가산정자료를 기준으로 함.
 - 향후 시설관리공단(가칭) 이전 등을 고려하여 위탁계약기간을 최단 기간(1년)으로 위탁.

□ 위탁사무의 범위

-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

□ 기대효과

- 양떼목장, 하늘마루목장, 선자령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계적인 운영으로 수익증대, 관광객 유치, 지역홍보 등

4. 향후계획

- 위탁협약 체결 및 협약서 공증 : '18. 12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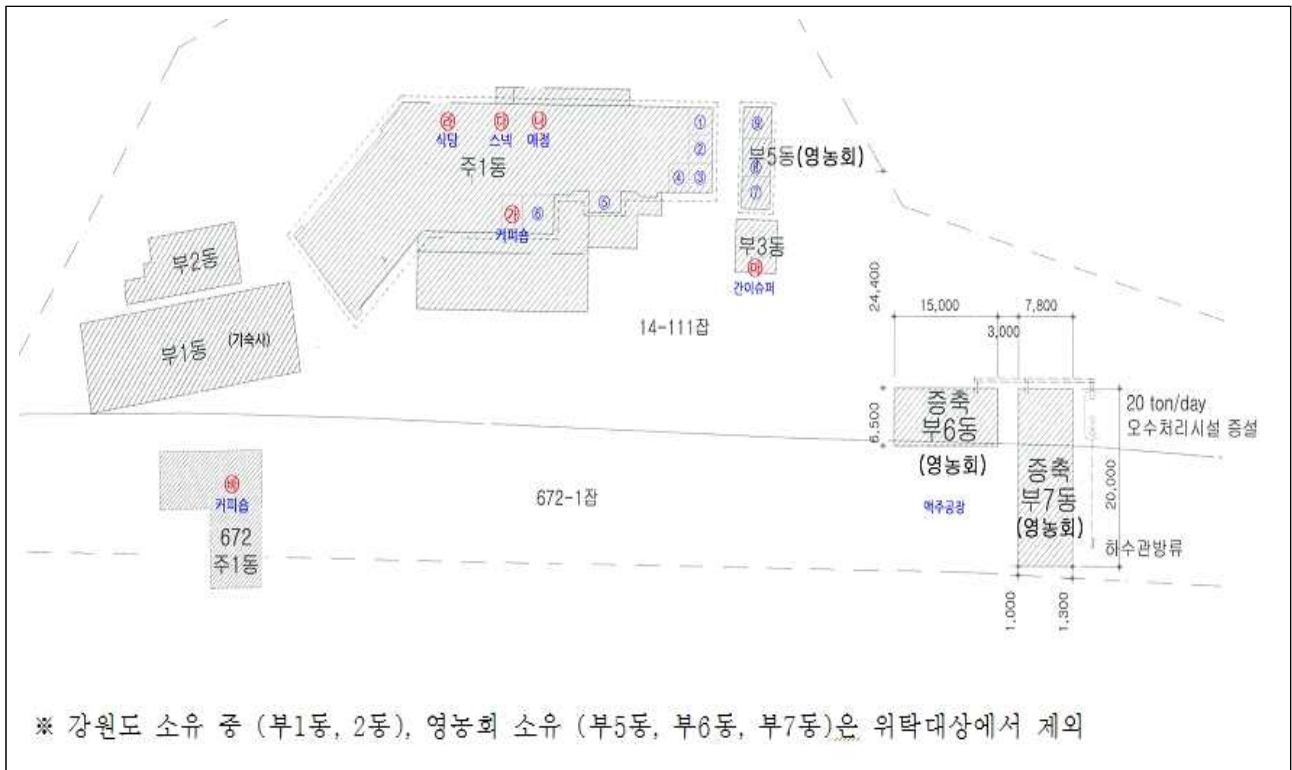
5. 불임자료

- 건축물과 토지 세부사항
- 민간위탁금 산출 내역
- 관계법령 발췌서

[붙임1 : 건축물과 토지 세부사항]

※ 건축물대장 기준

소재지	구분	층별	구조	용도	면적(m ²)
					1,424.827
대관령면 황계리 14-111, 14-304	주1	지하 1층	철근콘크리트	기계실,창고	289.847
	주1	1층	철근콘크리트조/아스팔트싱글	소매점,휴게음식점 ,일반음식점	617.250
	주1	1층	철골조/썬라이트	캐노피	283.59
	주1	1층	경량철골조/아스팔트싱글	휴게실	28.970
	※ 가설건축물(가설점포) : 6개소				38.24
	부3	1층	철근콘크리트조/슬라브	매점	36.000
대관령면 황계리 672-1, 14-304	주1	1	철근콘크리트조/슬라브	일반음식점	45.930
	주1	1	철근콘크리트조/슬라브	일반음식점	85.000



순번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	소유권
1	대관령면 황계리	14-111	잡	9,183㎡	강원도개발공사
2	대관령면 황계리	14-232	잡	3,302㎡	강원도개발공사
3	대관령면 황계리	14-294	잡	194㎡	강원도개발공사
4	대관령면 황계리	14-304	잡	8,690㎡	강원도개발공사
5	대관령면 황계리	14-306	잡	806㎡	강원도개발공사
6	대관령면 황계리	672-1	잡	7,357㎡	강원도개발공사
7	대관령면 황계리	14-293	잡	5,890㎡	강원도
계	-	7필지	-	35,422㎡	-
비고	(주)G1강원민방 일부부지(672-1번지)에 대한 토지사용허가부지 500㎡ 제외				

[붙임2 : 위탁금 원가계산 산출내역]

단위 : 원

비 목		구 분	금 액	구성비율	비 고
지 출 원 가	상 품	기 초 재 고 액	11,200,034		
		당 기 상 품 매 입 액	204,550,449		
		기 말 상 품 재 고 액(△)	6,602,467		
		소 계 (A)	209,148,015	47.50%	
	인 건 비 (B)	104,380,746	23.71%		
	경 비	복 리 후 생 비	8,600,743		
		여 비 교 통 비	79,133		
		통 신 비	856,023		
		수 도 광 열 비	4,622,900		
		전 력 비	21,029,095		
		세 금 과 공 과	3,701,770		
		감 가 상 각 비	22,624,879		
		지 급 임 차 료	343,600		
		수 선 비	5,554,485		
		보 험 료	2,364,399		
		차 량 유 지 비	3,698,912		
		소 모 품 비	8,094,555		
		지 급 수 수 료	10,136,393		
		소 계 (C)	91,706,888	20.83%	
일 반 관 리 비 (D)		15,744,430	3.58%		
이 윤(E) [(B+C+D)×(10)%]		19,347,636	4.39%		
총 지 출 (F=A+B+C+D+E)		440,327,715	100%		
수 입 원 가	상 품 매 출	425,195,001			
	임 대 료 수 입	43,272,727			
	총 수 입 (G)	468,467,728			
총 원 가 (G - F)		28,140,000		천원미만 절사	

[붙임3]

관령법 발췌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

-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-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-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. <신설 2013. 6. 21., 2015. 7. 20.>
 1.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2.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(이하 "관리수탁자"라 한다)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 3.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
 4.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·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·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6. 21.>

[전문개정 2009. 4. 24.]